

문서번호 231226-01호

수신 김현

업체정보 주식회사 뵁득(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3 용전빌딩 5층)

제목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1. 주식회사 뵁득(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갑”의 前 직원 김현(이하 “을”이라 칭한다)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합의금에 대하여 “갑”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할 구상권을 청구한다.
2. DS사는 “갑”이 소프트웨어(SOLIDWORKS)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한 이력을 확인하여 2023년 9월 19일 이에 대한 정식 제품 매입 및 손해배상금 청구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였다.
3. 해당 침해에 대한 경위를 살펴본 결과, “을”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S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SOLIDWORKS를 불법 복제하여 “갑”의 회사 계정으로 사용함을 확인했다.
4. DS사의 초기 합의안에 따르면 불법 라이선스 사용에 따른 정식 제품 매입 및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이 114,558,000원(VAT별도)이며, 3개월동안 세 차례 협의 끝에 최종 55,885,400원(VAT별도)으로 합의하였다.
5. “갑”은 법무법인 태평양(유한)과 함께 합의금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DS사는 “을”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현실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작했고 그 결과, “갑”의 책임이 상당한 수준으로 면책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민법 제756조에 의거하면 “을”이 가한 손해를 “갑”이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갑”은 충분한 보안 감독을 하였기에 동조 제3항에 따라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7. “갑”은 보안 규정을 수립하여 전사에 배포하였고, 충분한 주의 감독을 진행했음에도 “을”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법 경로로 SOLIDWORK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8.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최종 협의된 금액 55,885,400원(VAT별도) 전액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품 매입 금액을 제외한 합의금 25,000,000원(VAT별도) 을은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갑”에게 현금으로 2024년 2월 29일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9. 만일, 구상권 청구에 반하여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 및 민법 제756조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예고한다.

-끝-

담당자: 안혁건 (010-6692-2356) / 18lgurrs@bbodek.com

별첨 없음

법인명 주식회사 뽀득

대표자 박노준

대표번호 02-6231-0803

등록번호 479-87-00833

본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3, 5층

주식회사 뽀득